#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꾸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4036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4. 04. 23

◈ 가맹본부 홈페이지 www.jinjukyobang.com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 2024. 11. 29 ◆e-mail: noyool@naver.com

# 박군자진주냉면

# 정 보 공 개 서

(주)진주교방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 진주교방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 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B210호(대륭포스트타워7)

◈ 대표전화 : 02-856-0301◈ 팩 스 : 02-856-4848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02-856-0301

#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 연혁
- 3.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박군자진주냉면』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4. 최근 3년간 『박군자진주냉면』가맹점 수
- 5. 『박군자진주냉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6.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8. 광고・판촉 지출 내역
- 9. 가맹금 예치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刑)의 선고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주선의 대가
-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6.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8. 광고 및 판촉 활동
-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의 주체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 용 브 랜 드	주 소				
	『박군자진주냉면』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B210호 (대륭포스트타워7)				
┃ ┃ (주)진주교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十)位十四6	2013. 02. 06	2013. 03. 05	박군자	02-856-0301	02-856-4848	
	법인등록번호	110111-5062875	사업자등록번호	113-86-68450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박군자	박군자진주냉면	서울시 구로구 디지팅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B210호 (대륭포스트타워7)			
대표 이사	사업(	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 02	. 06 ~ 현재	박군자	02-856-0301	02-856-4848		
관 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하연규 박군자진주냉면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B210호 (대륭포스트타워7)				
이사	사업(	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 02	2. 06~ 현재	박군자 02-856-0301		02-856-4848		
관 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임재근	박군자진주냉면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B210호 (대륭포스트타				
이사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 02	2. 06~ 현재	박군자	02-856-0301	02-856-4848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진주냉면』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박군자진주냉면』	
상 호	『박군자진주냉면』OOO점	점명은 개점 전까지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 에서 가맹본부가 결정하여 가맹점주에 통보하게 됩니다.
	<b>単子ネスチ</b> は면 PARK GUN JA JINJU NAENGMYEON	서비스표 출원번호 : 45-2013-0006105
상 표 (서비스표)	PARK CONTROL OF THE C	서비스표 출원번호 : 45-2013-0006106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205,441,427	327,435,109	878,006,318	1,255,213,249	34,456,548	20,313,890
2022년	1,159,337,065	326,421,521	832,915,544	1,242,121,504	-35,170,366	-45,090,774
2023년	1,050,255,011	306,535,652	743,719,359	1,113,907,418	-52,827,026	-89,196,186

- 그 근거자료는 [별첨1] 과 같습니다.
- 2) 당사는 가맹사업 외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 업 경 력				
[ 권한어구	이 급	277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HI TI FII TOLL		2013. 2. 6~현재	(주)진주교방 대표이사	총 괄 업 무		
	박군자 대표이사	2013까지 21년간	진주냉면 대표	총 괄 업 무			
가맹사업	하여규 !	규 이사	2013. 2. 6~현재	(주)진주교방 이사	관리 업무		
관련 임원			2013년까지 35년간	진주냉면 대표	관리 업무		
임재근	재근 이사 -	2013. 2. 6~현재	(주)진주교방 이사	영업.관리 업무			
		2013년까지 35년간	시대축산 대표이사	총 괄 업 무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명)	직 원 수(명)	
시 검	상근	비상근	☐ 전 T(♂)	
2023년 12월 31일	3	-	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구 분	명 칭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인
(る) 박군자진주냉면 PARK GUN JA JINJU NAENGMYEON			2013.10.24	45-2013-0006105	
SINCE 1945	서비스 표	박군자 진주냉면	2013.10.24	45-2013-0006106	(주)진주교방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출원 중이므로 등록되기 전까지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4년 3월 5일

### 2. 『박군자진주냉면』연혁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경 영 기 간	주주 소
ᄼᄌᄭᄌᆢᆎ	바그자지즈내며	바그자	2013. 2. 6~현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十)선구파당	(주)진주교방 박군자진주냉면	기 국 교 시	2013. 2. 6~연제	B210호(대륭포스트타워7)

### 3. [박군자진주냉면]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바구자지주내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박군자진주냉면	한식	냉면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박군자진주냉면』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최근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TICI	g 2021년 12월 31일		202	22 12월 3 <sup>.</sup>	1일	20	23 12월 3 <sup>.</sup>	1일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12	12		11	11		12	12	
서 울									
인 천									
부 산									
대 구	1	1		1	1		1	1	
광 주									
대 전									
울 산	1	1		1	1		1	1	
세 종									
경 기	4	4		3	3		3	3	
강 원									
충 북							1	1	
충 남	2	2		2	2		2	2	
전 북									
전 남									
경 북	2	2		2	2		2	2	
경 남	2	2		2	2		2	2	
제 주									

#### 5. 최근 3년간『박군자진주냉면』가맹점 수

당사의 최근 3년간 변동된 가맹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연 도	연 초	신 규 개 점	계 약 종 료	계 약 해 지	명 의 변 경	연 말
2021	14		2			12
2022	12		1			11
2022	11	2	1			12

#### 6. 『박군자진주냉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박군자진주냉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8. "박군자짐주냉면" 영업기간

"박군자진주냉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sup>®</sup>	평균 영업기간 <sup>②</sup>
2023년	12개	2,301일 / 6.3년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에 지출한 광고 • 판촉 내역이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치 기 관 상 호	담 당 부 서	주 소	전 화 번 호
중소기업은행	영업부	서울시 동작구동작대로27(사당동)	02-582-3231

귀하는 예치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일 날 [ 중소기업은행 ]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 중소기업은행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박군자진주냉면』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 중소기업은행 ]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sup>①</sup>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박군자진주냉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 (단위: 천원, VAT 포함)

_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비고
가 맹 비	11,000	계약서 작성일 예치	
교 육 비	5,500	게 하시 극 6 로 에시	- 가맹점당 2인 이내
총 계			16,500
반환 조건	• 귀하는 계약체결 후 (7일)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가맹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사(당사가 지정하는 자 포함)가 설비 등을 시공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와 공사공급계약 체결 후 (7일)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총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 등의 공사완성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 당사가 공사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자재 등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계약기간의 만료		

#### ※ 참조 - 가맹금의 반환사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1.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 우에는 7일) 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 우
- 3.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4.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귀하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5.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가 귀하에게 도달된 날부터 귀하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6.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

업을 경영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귀하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부터 귀하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보증금 및 담보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6.5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천원, 부가세포함)
합 계	16,500
가 맹 비	11,000
교 육 비	5,5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7]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66m² 기준, VAT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필수설비 (정착물)	가맹점주 직접공사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점주 직접공사					
최초공급 상품비용	협력업체	5,000		영업1일전	가맹계약 취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점주 선택비용					

위 표의 최초 공급상품비용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용은 가맹점주가 직접 공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 우 당사나 제3자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가 귀하에게 영업지역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 입지는 당사의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귀하가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합니다.
- ② 당사는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영업지역을 귀하에게 제시합니다.
- ③ 귀하와 당사가 협의하여 그 중에서 귀하가 한 곳을 선택합니다.
- ④ 당사가 지도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영업지역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귀하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영업개시 전까지 해당 인력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와 종업원의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당사는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귀하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은 영업개시 전의 신규교육과 영업개시 후의 재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합니다.
- 2. 당사가 신규교육을 실시할 경우 귀하에게 (7 일)전에 장소와 시간, 교육내용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화, 모바일 상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당사는 재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귀하에게 교육실시 (7일)전에 장소와 시간, 그 비용 및 산출근거, 교육내용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 한 자는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5. 귀하의 점포관리자가 신규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귀하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 7.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 점포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u>1일당 금일십오만원(\#200,000)(</u>VAT별도)으로 하며, 숙박비용은 실비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박군자진주냉면』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착 수 금	중 도 금	잔 금
금	액	공사금액의 50%	공사금액의 40%	공사비의 10%
지급	시기	계약서 작성일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가맹사업 개시 3일 전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당사에 지급하야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기지급금

구 분	정기지급금
지급대상	협력업체
금 액	순매출액의 3%(VAT별도)
지급기한	매 익월 10일
반환조건	소멸(반환불가)
반환 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사용, 영업지원, 점포 디자인사용 등
비고	월중 오픈 시 일할 계산하여 납부

### ② POS 사용료

구 분	POS 사용료(단위 : 천원, VAT 포함)
지급대상	미결정
금 액	미결정
지급기한	추후협의
반환조건	소멸(반환불가)
반환 할 수 없는 사유	POS 사용 대가
비고	월중 오픈 시 일할 계산하여 납부

### ③ 광고·판촉 분담금

구 분	광고•판촉 분담금
지급대상	협력업체
금 액	당사 : 50%,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 사업자 : 50%
지급기한	p28 참조
반환조건	광고・판촉 활동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 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 활동을 시행한 경우
비고	광고•판촉 활동 필요 시점 : 협의 결정

### ④ 기타 교육비

구 분	기타 교육비
지급대상	협력업체
금 액	1일당 금 일십오만 원( ₩ 200,000 )(VAT별도)
지급기한	교육 시작 7일전 지급
비고	귀하가 필요시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 점포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경우

### ⑤ 지식재산권 변경 시 비용 분담

구 분	지식재산권 변경 시 비용 분담
지급대상	현재 미지정
금액(천원)	추후협의

### ⑥ 점포환경개선 비용

구 분 점포환경개선 비용
---------------

지급대상	협력업체
금 액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고	33페이지 참조

#### ⑦ 지연이자

구 분	지연이자
지급대상	협력업체
금 액	연 20%
지급기한	지급 기일의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비고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①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귀하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가맹점을 점검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의 점검에는 고객서비스 상태 표준 레시피 준수 품질기준 준수 상품관리 회계처리 각종 설비 및 기기관리가 포함됩니다.
- ②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에 대한 점검결과가 부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는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발송 시 점검에 대한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점검결과 부진점		
1회	연속 2회	연속 3회
- 협조공문 발송	- 1차 시정조치 공문 발송	- 2차 시정조치 공문 발송
- 업소증도 결정 	- 휴점 예고	- 3일 휴점

- 상품공급 중단	- 상품공급 중단
- Recall 교육	- 경영진단

- ③ 귀하는 당사가 제2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당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귀하가 실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관계서류(회계장부, 영업장부 등 )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⑤ 가맹점의 위생상태 점검은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이경우 귀하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당사의 직원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위생점검 직원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⑦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점검 후 당사의 시정요구사항 또는 자료제출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고지 없이 다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 갱신, 재계약을 포함합니다. ) 하기 위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날로부터 (14일)전에 재 가맹비로 금일백만원(₩1,000,000)(VAT별도)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가. 당사는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 당사는 즉시 귀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서면으로 그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 1. 양수인에 관한 사항
    -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 3. 계약유지 또는 해지에 관한 선택 여부에 관한 사항
  - 나. 귀하는 위의 승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승인을 거절하여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계약의 중도 합의 해지(가맹계약서 제36조제4항 참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으로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가. 당사는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

보하여 귀하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사용권의 권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 나. 당사가 제1항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또는 모든 가 맹점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귀하에게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전날로부터 또는 지식재산권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모든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다. 당사는 지식재산권이 변경된 경우 즉시 귀하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귀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상품과 기타 가맹점의 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은 당사와 귀하가 혐의하여 결정합니다.
- 라. 당사는 귀하에게 지식재산권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포함)하여 귀하게 사용권을 부여하여야합니다.
- 마.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가. 당사는 가맹사업을 중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유(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 제외)로 가맹사업을 중단 할 경우 당사는 즉시 귀하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귀하는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 할 경우 당사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중도 합의 해지(가맹계약서 제36조제4항 참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면제합니다. 이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① 양도인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박군자진주냉면』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과정에서 귀하가 당사에 부담하여 할 비용은 없습니다.

#### ② 양수인의 부담

#### 가. 잔여 계약기간을 승계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만

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나.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 <u>금일천만원</u> (<u>₩10,000,000</u>)(VAT 별도)을 지급하고,

#### 다. 잔여계약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와 신규가맹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의 공통사항

양수인은 당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 •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u>금오백만원</u> (<u>₩5,000,000)</u>(VAT별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 또는 새로운 대표자가 교육 •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귀하는 기간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이하 종료일이라 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 당사의 영업표 지와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철거하여야 하며, 영업은 종료일의 익일부터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2. 당사는 제1항의 종료일 (3일)전에 귀하의 매장을 방문하여 재고품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재고품 등이 만료일 이후까지 남게 될 경우 귀하에게 적정한 소진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경우 영업표지와 설비 등은 소진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영업은 소진일 익일부터 중단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제1항의 경우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영업의 중지 및 영업표지를 철거했다는 증거를 당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4. 귀하가 영업지역에서 게재 중인 지역광고 등의 경우 종료일 전에 자진 철거 회수 하여야 합니다.
- 5. 당사는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귀하는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귀하에게 소진기간을 주었을 경우 소진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
- 6. 제3항의 경우 귀하가 당사에게 영업의 중지 및 영업표지를 철거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당사는 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귀하에게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7. 귀하는 계약종료를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상품을 당사에 반환할 수 없습니다.
- 8.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귀하가 부담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박군자진주냉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원·부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별지로 제공)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젹 이익

귀하가 [박군자진주냉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으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박군자진주냉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허가 없이 소비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판매·대여할 수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및 제한	가격 통보 방법
<ul> <li>1. 당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 가격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와 달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반드시 당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합니다.</li> <li>2. 당사가 귀하에게 타사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서면 또는 전산상으로 공급가격조건을 통지할 것 입니다.</li> </ul>	

권장가격은 귀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

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국인 비중 리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박군자진주냉면	-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으로 인정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1.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귀하의 영업지역을 재조정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재조정 사유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2. 귀하는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사와 영업 지역 재조정을 협의합니다. 귀 하가 영업지역의 재조정에 응
인하여 해장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사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이 완료됩니다.(신규점 포 입점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귀하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sup>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②</sup>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박군자진주냉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만료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O조 O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	O조 O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O조 O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O조 O항
○ [반포삼겹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O조 O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O조 O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계약의 일반해지

- 1. 귀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후 (30일)이 지나도 영업 개시를 못 하는 경우
- 2.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3. 귀하가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장래 채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 4.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 5. 귀하가 당사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6. 귀하가 (2회) 이상 상품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 7.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하도록 지정된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8.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 9.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박군자진주냉면』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10.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11. 귀하가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 12.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당사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자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13.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 14. 귀하가 일일 판매현황을 전산프로그램에 매일 입력하지 아니 하는 경우
- 15. 귀하가 영업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또는 고의로 누락하여 보고하는 경우
- 16. 귀하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 17. 귀하가 당사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 18. 귀하가 휴업을 실시하며 휴업사실을 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 19. 귀하가 ( 2회 )이상 가맹계약서 제31조( 제 상품 등의 공급중단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20.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1.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22. 귀하가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하게 하는 경우
- 23. 귀하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② 귀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 계약 해지일로 부터 (1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 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1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당사가 본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영업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가맹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와과 약정한 서비스 등의 공급 또는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3.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 ③ ① 및 ②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 나) 계약의 즉시해지

- ① 당사는 귀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귀하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② 귀하는 당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2. 당사가 파산 신청한 경우
  - 3. 당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4.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5. 당사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6.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①과 ②의 경우 당사와 귀하는 서면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 법개정 또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로 계약은 수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에서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야 합니다.

- 1. 귀하는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2 개월)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2. 귀하는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예. 귀하가 가맹점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사는 승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승인 또는 거절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가 승인을 거절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만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제4항의 경우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 <u>금일천만원</u> (₩10,000,000)(VAT 별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제4항 또는 제5항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당사에 양수인과의 양수도 계약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하여 대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대행수수료로 <u>금오십오만원 (₩550,000)</u> (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제4항 또는 제5항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 양수인과 작성한 양수도 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하여 야 합니다.
- 8. 가맹계약기간 중 당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운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1. 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2.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 3.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 9. 제4항 내지 제5항의 양수인 또는 제8항 제1호의 새로운 대표자는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금오백만원( \#5,000,000 )(VAT별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 또는 새로운 대표자가 교육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①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상속인의 가맹점운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1. 귀하가 사망한 경우에 직계상속인이 귀하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u>금일백일십만원(\#1,100,000)(</u>VAT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상속인이 영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 당사에 승계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승계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사망일로 소급하여 종료됩니다.
- 3. 상속인이 가맹점사업자로서 합당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예. 귀하가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게 하는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박군자진주냉면』과 동일 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귀하가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귀하의 영업일은 (주 6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사전 승인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귀하는 당사가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 휴업하기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

야 하며, 당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및 휴업내용을 표시하여 고객들에게 휴업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영업 시간	영 업 일 수	비고
오전10:00~오후08:00	주6일	문의 : 관리팀(02-856-0301)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귀하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가맹점을 점검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의 점검에는 고객서비스 상태 표준 레시피 준수 품질기준 준수 상품관리 회계처리 각종 설비 및 기기관리가 포함됩니다.
- 2.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에 대한 점검결과가 부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는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발송 시 점검에 대한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점검결과 부진점			
1회	연속 2회	연속 3회	
	- 1차 시정조치 공문 발송	- 2차 시정조치 공문 발송	
   청ㅈ고묘 바소	- 휴점 예고	- 3일 휴점	
- 협조공문 발송	- 상품공급 중단	- 상품공급 중단	
	- Recall 교육	- 경영진단	

- 3. 귀하는 당사가 제2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당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귀하가 실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4. 제1항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관계서류(회계장부, 영업장부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5. 가맹점의 위생상태 점검은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6 개월)에 (1 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이경우 귀하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 6.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당사의 직원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위생점검 직원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7.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점검 후 당사의 시정요구사항 또는 자료제출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고지 없이 다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박군자진주냉면』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나누어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구 분	광고성격	분 담 비 율		분 담 절 차	비고
十七		본 사 부 담	가 맹 점 부 담	분 담 절 차	U <u> </u>
광고 전체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는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 들이 안분	광고 계획 공고→가맹점 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	대중매체광 고, 전국단 위 또는 지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 세서)	역단위 광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각 가맹점 사업자들이 안분 하며, 지역광고일 경우는 해당 가맹점사업 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1.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광고 판촉활동 중 당사가 상품광고 또는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방법 시기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비용부담은 당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안분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비용부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가맹점 모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판촉의 경우 그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 3. 제1항 판촉활동의 경우 당사는 영업이 부진한 지역에 판촉 기간 또는 비용부담을 다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귀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 당사는 광고 또는 판촉 실시 (1개월)전까지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 야 할 광고 판촉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귀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귀하는 필요 시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 방법 시기 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6. 제5항의 경우 귀하의 요청에 의해 당사는 경품, 기념품 및 팸플릿, 전단지, 리플릿 등의 서비스 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7. 귀하가 가맹점 영업개시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홍보 판촉행사를 직접 진행하며, 비용도 귀하가 부담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귀하는 계약 기간 중 알게 된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의 종료 후 (2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승인 없이 당사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자료 등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귀하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 또는 당사로부터 제공 받은 매뉴얼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비밀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의 <u>평균 월매출액 x 3개월분</u>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귀하가 가맹계약서 해지 사유 또는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과거 1년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의 <u>평균 월매출액 x 3개월분</u>의 금액을 위약 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귀하가 계약의 만료 후 당사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여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만료일의 익일(귀하에게 소진기간을 준 경우에는 소진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1일당 금일십만원(\(\pm\)100,000)씩 계산하여 계약종료 후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당사의 요구에 의해 또는 귀하의 요구에 의해 본 계약이 중도에 합의 해지되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타방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 계약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 귀하의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u>평균 월매출액 x 3개월</u>의 금액
  - 나. 계약기간이 6개월을 경과 한 경우 귀하의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매출액 x 2개월의 금액

- 5. 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1호의 경우 귀하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여 월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근『박군자진주냉면』타가맹점 5개를 기준(5개가 안 되는 경우 개점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고, 1개의 가맹점도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평균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월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 당사는 귀하의 이행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다.
- 7. 본 계약상 금전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급 기일의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년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66m² 기준, VAT별도)

구 분	내 용	소 요 기 간	소 요 비 용
		30일 내외	-
개설상담 신청	- 가맹점 개설 상담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1~3일	없 음
점 포 조 사	- 상담 후 점포 조사	1~3일(숙고기간에 병행)	없 음
숙 고 기 간	-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	14일(자문 시 7일)	없 음
점 포 확 정	- 점포 확정	1일	점포 임대 비용
실측 및 견적 산출	- 점포 인테리어 실측 - 견적 산출	2~3일	없 음
가맹계약 체결	- 가맹비 예치 - 중소기업 은행	1일	15,000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5~10일	참 조

인허가 및 교육이수	- 인허가 신청 및 사업자 등록 - 개점 전 교육 이수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참 조
개 점 준 비	- 초도물품 입고	2일	참 조
개 점	- 영업개시	즉시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기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 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을 유자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o 간판교체 비용 o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로는 알레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 환 경 개 선 : 40%	○ 가맹점사 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증 병화 수 있는 서류 에 내에 기맹본부 사업자 기급 가맹본 사업자 기급 가맹본 기명 하는 기업 이 되었다. 기업 이 기업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해당 없습니다.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박군자진주냉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인적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대출을 위한 신용이나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박군자진주냉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 육 방 식	기 한	비고
	1.『박군자진주냉면』사업 소개 2. 매장운영 및 관리 3. 사업수익 관리 4. 위생교육 5. 상품 관련 교육	개 별 교 육	추 후 공 지	필 수 교 육
	1. 마케팅 교육 2. 사업운영 3. 직원채용 및 관리 요령	실 습 교 육		
보수교육	1. 고객 응대 교육 2. 상품 판매 교육	실 습 교 육 집 단 강 의	추 후 공 지	매 년 이 수 (필 수)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박군자진주냉면』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 소 시 간 (단위 : 천원 VAT 별도)	비 용	비 고
신 규 교 육	약 5일	5,0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 수 교 육	추 후 공 지	추후공지	필 수 교 육
추 가 교 육	추 후 공 지	구구하시	양수・양도 또는 상속 등 사유 발생 시 시행
기 타 교 육	1일당 200		귀하가 필요시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 점 포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경우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가맹점관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 및 가맹점관리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 시 당사는 갱신요구 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856-0301 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1. 『박군자진주냉면』점포 예정지 주변의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본부 (주)진주교방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전화 번호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	역

NO.	상호	대표자 이름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별지 2. 박군자진주냉면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주)진주교방]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본인이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만일 본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성명: (인)

가맹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

가맹희망자의 주소 :

가맹희망자의 전화번호 :

년 월 일

(주) 진 주 교 방 (인)

#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주)진주교방]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본인이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만일 본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성명: (인)

가맹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

가맹희망자의 주소 :

가맹희망자의 전화번호 :

년 월 일

(주) 진 주 교 방 (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